

서울특별시의회
제303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

제안 설명



2021. 12. 17.

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기찬 의원입니다.

- 오늘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학생 및
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
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
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
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.
이를 위해 동 조례안에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
지급근거와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,
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및 기준 등에
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